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환경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「환경보건법」이 개정(‘24.2.17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(안 제19조의3)

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, 결과보고서(재발 방지 대책 포함)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

나. 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임·위탁(안 제22조)

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관련 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·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

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2호 중 “합성고무”를 “합성수지·합성고무”로 한다.

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하고,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방법 등)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등
2. 해당 어린이용품의 제조연월(수입용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)
3. 위반 사항
4. 회수 등의 방법과 기간

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

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
제22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명령
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·수선의 규모)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	제16조의2(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·수선의 규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(도료, 마감재료 또는 <u>합성고무</u>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한 때	2. ----- ----- -- <u>합성수지·합성고무</u> ----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3(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방법 등)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
	<u>1.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등</u>
	<u>2. 해당 어린이용품의 제조연월 (수입용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)</u>
	<u>3. 위반 사항</u>
	<u>4. 회수 등의 방법과 기간</u>

	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9조의3 (생략)	제19조의4 (현행 제19조의3과 같음)
제22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삭제	제22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	② -----
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· 4. (생략) ③ (생략)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· 7. (생략) ⑤ ~ ⑧ (생략)	----- ----- 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 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7. · 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754